

의안 번호	2504	<p>【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(안)】</p> <h1 style="margin: 0;">검 토 보 고 서</h1>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

1. 검토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. 11. 11.(화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11. 11.(화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12. 2.(화)

2. 제안이유

- 2025년도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에 대한 2026년도 수입 및 지출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와 기금 간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기금조성액

(단위 : 천원)

2025년도 조성액(A)	2026년도 조성계획			2026년말 조성액(A+D)
	수입(B)	지출(C)	증감(D=B-C)	
3,383,127	73,990	3,064,500	△2,990,510	392,617

나. 수입계획

(단위 : 천원)

항 목	금 액	전년도 수입액	증 감
계	3,457,117	8,175,514	△4,718,397
216-01 공공예금 이자수입	73,990	125,752	△51,762
714-01 예치금회수	3,383,127	8,049,762	△4,666,635

다. 지출계획

(단위 : 천원)

항 목	금 액	전년도 지출액	증 감
계	3,457,117	8,175,514	△4,718,397
602-01 일반예치금 (재정안정화계정)	392,617	1,082,514	△689,897
705-01 예수금원금상환	3,000,000	7,000,000	△4,000,000
705-02 예수금이자상환	64,500	93,000	△28,500

4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

5. 검토의견

- 본 기금 운용계획 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에 의거 2025년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에 대한 2026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와 기금 간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.

근거법규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-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